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2.10.26.15:00)

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(의회운영위원회)

【 의안번호 제82호 】

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0월 26일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안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0. 19. 서명일 의원 등 33명

❍ 회 부 일 자 : 2022. 10. 20.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(2022. 10. 26.)상정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서명일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지방자치법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지원 등)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
❍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❍ 직무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○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**(안 제5조)**

○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**(안 제6조)**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규

- 지방자치법, 지방자치법 시행령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- 공직선거법, 지방공무원법 등

○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)

○ 입법예고

- 기간 : 2022. 10. 19. ~ 10. 25
- 결과 : 제출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정정연)

❍ 상위법의 조례 제정 관련 근거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원 및 의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❍ **주요내용은**

- **안 제2조**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5항에 근거에 의하여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를 규정함.

- **안 제3조**에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에서 정책지원관 직무를 규정함.

- **안 제4조**에서 정책지원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이므로 「지방공무원법」,「공직선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에 따른 직무수행 제한을 규정 함.

- **안 제5조 및 제6조**에서 비밀엄수 및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❍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의 조례 제정 근거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,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 ·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